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1. 3. 5
- 나. 제출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1. 3. 5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1. 3. 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가.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2000. 10. 23)으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이 확대되고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변동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 중 확대(안 제2조)
 - 판매시설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
 -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등 통신용시설이 신설됨
-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안 제6조제1항)
 -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0분의 10을 1,000분의 7로 하되, 연면적이 20,000㎡ 초과시 초과연면적에 대하여는 1,000분의 5를 적용
 - 공동주택
 - 1,000분의 1을 1,000분의 2로 하되, 연면적이 50,000㎡ 초과시 초과연면적에 대하여는 1,000분의 1을 적용

3.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내 용 | 답 변 내 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건축비와 실제건축비의 차이는? ○ 비율을 가장 낮게 책정한 이유는? ○ 비율조정시 건축주에게 혜택이 있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규정으로 차이를 두고 있음 ○ 수도권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 약간의 비용감소 혜택이 있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소수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 |
|-------|-----------------------|
| 의안번호 | 관련 제447호 |
| 의결년월일 | 2001. 3. 14 (제85회) |

제출년월일 : 2001. 3. 13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장

수정이유

-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표준건축비를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에 100% 적용토록 했던 것을 95%로 경감 적용하여 건축주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 면적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건축주의 부담이 더욱 경감되는 효과도 있지만 장식품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장식품의 양질화로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

주요골자

-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0분의 7과, 1,000분의 2로 일괄 적용토록 조정(안 제6조)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1,000분의 7로 하되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5를 적용한다."를 "1,000분의 7"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1,0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를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1을 적용한다.”를 “1,0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제6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①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제6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①……제24조의 …… ……한되,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6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① (개정안과 같음) |
| 1.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분의 1 | 1.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0분의 7로 하되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5를 적용한다. | 1. …… …… 1,000분의 7 |
| 2.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 이상 | 2.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1을 적용한다. | 2. …… …… : 1,000분의 2 이상 |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번호 | 제447호 |
| 의결년월일 | 2001. 3. 14 (제85회) |

제출년월일 : 2001. 3. 5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2000. 10. 23)으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이 확대되고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변동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 중 확대(안 제2조)
 - 판매시설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
 -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등 통신용시설이 신설됨
-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안 제6조제1항)
 -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1,000분의 10을 1,000분의 7로 하되, 연면적이 20,000㎡ 초과시 초과연면적에 대하여는 1,000분의 5를 적용
 - 공동주택
1,000분의 1을 1,000분의 2로 하되, 연면적이 50,000㎡ 초과시 초과연면적에 대하여는 1,000분의 1을 적용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를 “다음 각호의 1”로 하고 동조 제4호 중 “판매시설”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제3조 내지 제5조·제7조 및 제8조 중 “미술장식품”을 각각 “미술장식”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24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2호”를 “영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시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을 “시장에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미술장식품”을 “미술장식”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0분의 7로 하되,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5를 적용한다.
2.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1을 적용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4조의제5항”을 “제25조의3제4항”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미술장식 설치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3일 이후에 신축 또는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 시장 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 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 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 다.</p> <p>1~3(생략)</p> <p>4. 판매시설</p> <p>5.(생략)</p> <p>(시설)</p> | <p>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 ……</p> <p>……………</p> <p>……………</p> <p>……………<u>다음 각호의</u></p> <p>1……………</p> <p>……………</p> <p>……………</p> <p>1~3(현행과 같음)</p> <p>4. 판매 및 영업시설</p> <p>5.(현행과 같음)</p> <p>6.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p> |
| <p>제3조(미술장식품의 설치) ①시장은 영 제24조제1 항 및 영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 는 건축공사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 <p>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①…………영 제24조제1항 ……</p> <p>……………</p> <p>……………<u>미술장식</u>……………</p> <p>……………</p> <p>②……………</p> <p>……………</p> <p>……………<u>시장에게 미술장식</u>……………</p> <p>……………</p> |
| <p>제4조(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 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 <p>제4조(미술장식의 설치확인)……………</p> <p>……………<u>미술장식</u>……………</p> <p>……………</p> |
| <p>제5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설치계약 서상의 금액으로 한다.</p> <p>②가중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장식품으로 설치할 경우 그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전문가관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p> | <p>제5조(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 ①……<u>미술장식</u>……</p> <p>……………<u>미술장식</u>……………</p> <p>……………</p> <p>②……………<u>미술장식</u>……………</p> <p>……………<u>미술장식</u>……………</p> <p>……………</p> |

| 현 행 | 개 정 안 |
|--|---|
| <p>③시장은 부천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6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p>1.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분의 1</p> <p>2.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 이상</p> <p>②(생략)</p>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 미술장식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부천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및 ④(생략)</p> <p>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5 (생략)</p> | <p>③.....미술장식.....미술장식.....</p> <p>제6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p>1.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0분의 7로 하되,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5를 적용한다.</p> <p>2.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1을 적용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제24조의3제4항.....미술장식.....미술장식.....</p> <p>②.....미술장식.....</p> <p>③ 및 ④(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회의 기능)미술장식.....</p> <p>1~5 (현행과 같음)</p> |